

**미국**

**법원, 유명 작가가 타인의 사진을 차용한 작품들이 해당 작가 특유의 스타일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사진작가가 촬영한 유명 가수의 사진의 일부를 앤디 워홀이 자신의 작품에 차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2019년 7월 1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워홀의 작품들이 타인의 사진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원저작물과는 상이한 미학을 채택함으로써 원저작자의 사진이 아닌 워홀의 작품으로 합리적으로 인식되는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사실 관계**

- 사진작가인 피고는 1981년 유명 음악가인 프린스(Prince)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잡지사가 1984년 11월호에 포함된 프린스 관련 기사에 해당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
- 해당 잡지사는 해당 사진을 바탕으로 한 프린스의 초상화 제작을 앤디 워홀에게 의뢰하였고 워홀의 프린스 시리즈 16점(이하 “프린스 시리즈”) 중 한 점의 작품이 잡지에 수록됨.
- 2016년 프린스 사망 이후 해당 잡지사는 1984년 발간되었던 기사를 재발간하면서 프린스 시리즈 중 1984년 발간되었던 기사에 수록되지 않았던 작품을 잡지 표지로 사용함.
- 자신의 사진이 프린스 시리즈에 차용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앤디워홀재단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힘. 이에 대

하여 앤디워홀재단은 공정이용을 주장하면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1>

- 2019년 7월 1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워홀의 작품들이 타인의 사진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사진이 아닌 워홀의 작품으로 합리적으로 인식되는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프린스 시리즈와 피고의 사진을 비교하면 프린스 시리즈는 상이한 성격과 새로운 표현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미학을 채택함으로써 원저작물과 상이한 창작적·소통적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변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프린스 시리즈가 합리적으로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피고의 사진은 프린스를 편안하지 않은 사람이며 상처받기 쉬운 인간으로 묘사한 반면, 프린스 시리즈 속 프린스는 실제보다 과장된 상징적인 인물로 변형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식될 있음.
  - 프린스 시리즈에서는 프린스의 몸통이 제거되고 프린스의 셔츠 목선의 일부가 중심부에 위치함.
  - 피고가 강조하고자 한 사진 속에서의 딱딱해 보이는 프린스의 골격이 프린스 시리즈 일부에서는 부드럽게 표현되었고, 다른 일부에서는 윤곽이 보여지거나 음영처리가 되었음.
  - 프린스 시리즈 속 프린스는 피고의 사진 속에서 상세하게 묘사된 3차원적 인물과 달리 평평한 2차원적 인물임.

<1>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et al, No. 1:17-cv-02532 (S.D.N.Y.. July 1, 2019)

- 피고의 사진이 검정색과 흰색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프린스 시리즈 중 많은 작품들은 요란하고 인위적인 색채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프린스 시리즈 중 무채색의 일부 작품들도 원저작물과는 완전히 다른 대강의 스케치처럼 보임.
- 피고의 사진 속에서 프린스가 상징하는 인간다움이 프린스 시리즈 속에서는 사라짐.
- 프린스 시리즈는 피고의 사진이 아닌 워홀의 작품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워홀이 마릴린 먼로, 마오쩌둥을 묘사한 작품들이 이들의 실제 사진이 아닌 워홀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임.
- 프린스 시리즈가 변형적이라는 점 때문에 원저작물의 성격은 공정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성이 감소함.
- 워홀이 피고의 사진 속에 나타난 프린스의 머리와 셔츠 목선 일부를 사용하는 했지만 워홀이 프린스 시리즈를 창작하면서 피고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거의 모두 제거하였다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워홀은 프린스의 얼굴의 날카로운 윤곽 및 검정색과 흰색 대신 밝은 색채를 선택하고 원저작물의 3차원적 효과가 아닌 평평한 2차원적 효과를 줌.
  - 프린스의 머리 포즈와 각도가 원저작물로부터 복제되었지만 이러한 포즈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며, 피고 이외의 사진작가들이 촬영한 프린스 사진들 역시 피고의 사진과 동일한 포즈를 포착하고 있다는 점은 포즈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을 보여줌.
  - 프린스 시리즈에서 볼 수 있는 프린스의 얼굴 특징들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워홀과 피고의 라이선싱 시장은 상이하며, 프린스 시리즈는 피고의 시장을 훼손하는 시장 대체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잠재적 이용자들이 위홀의 독창적인 미학을 보여주는 위홀 스타일로 구성된 프린스 시리즈를 피고의 친근하고 사실적인 사진의 대체물로 인정할 이유가 없음. 피고가 자신의 사진과 위홀의 작품 모두 잡지나 음반 커버에 사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잡지사나 음반 회사가 사실적인 피고의 사진 대신 변형적인 위홀 작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평가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저작물 이용의 변형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이차적 이용이 원저작물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미학을 제공하는지 여부가 주된 고려 사항임을 재확인함<sup><2></sup>.
-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사진을 차용한 작가들의 작업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는 최근의 경향<sup><3></sup>이 사진작가들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2> Bill Graham Archives v. Dorling Kindersley Ltd., 448 F.3d 605 (2d Cir. 2006)에서 제2 순회항소법원은 글과 이미지로 이루어진 콜라주를 만들기 위하여 타인의 포스터를 도서의 연대표, 본문, 그래픽과 결합한 경우 타인의 포스터의 표현적 가치가 최소화되었다는 이유로 공정 이용을 인정함. 반면 North Jersey Media Group, Inc. v. Pirro, 74 F. Supp. 3d 605 (S.D.N.Y. 2015)에서 뉴욕남부지방법원은 타인의 사진을 변형없이 다른 사진과 배치하여 논평과 함께 페이스북(Facebook) 재게시한 경우 원저작물의 두드러진 특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 이용을 인정하지 않음.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Donald Graham v. Richard Prince, et al. 2017 U.S. Dist. LEXIS 111521 (S.D.N.Y. July 18, 2017)에서 뉴욕남부지방법원은 타인의 저작물 전체를 상당한 변형 없이 그대로 이용하여 원저작물이 가지는 미적 매력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경우 공정 이용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함.

<3> Cariou v. Prince, 714 F.3d 694 (2d Cir. 2013). 이 사건에서 유명 차용미술 작가인 리처드 프린스는 ‘Canal Zone’이라는 연작을 창작하면서 사진작가 카리우의 사진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소됨. 이에 대하여 제2 순회항소법원은 프린스의 작품 중 5점을 제외한 25점의 작품들이 표현상 특징, 구성, 설명 방식, 크기, 컬러 팔레트(color palette)와 매체에서 카리우의 사진과 근본적으로 상이하고 새롭다는 이유로 변형성이 인정되며 프린스의 작품은 카리우의 작품과는 전혀 다른 콜렉터를 대상으로 하므로 카리우의 작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정이용을 인정한 바 있음.

## ※ 참고 자료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new-york/nysdce/1:2017cv02532/472094/84/>(판결문 원문)

<https://www.techdirt.com/articles/20190706/01442442523/big-fair-use-win-concerning-andy-warhols-paintings-prince.shtml>

<https://www.smithsonianmag.com/smart-news/warhols-prince-image-doesnt-violate-copyright-judge-rules-180972559/>

<https://www.insideimaging.com.au/2019/warhol-foundation-fights-with-fair-use/>

**미국**

## YouTube, 기존의 저작권 침해 신고 방식을 개편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다

**유현우**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2019년 7월 9일 YouTube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내 저작권 침해 및 권리자의 권리 확인 청구 방식을 개편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함. 앞으로 YouTube는 음반사나 영화 스튜디오 등 저작권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 신고 시 문제 된 크리에이터의 해당 콘텐츠에서 저작권 침해 요소가 정확히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 지목해야 하는 방식으로 신고 방식을 변경할 계획임. 동시에 YouTube는 크리에이터들이 저작권 침해 신고에 보다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 이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도 저작권이 문제 된 장면만 삭제하거나 편집해 버리면 YouTube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음.

### YouTube의 저작권 침해 신고 방식에 대한 계획 발표

- 2019년 7월 9일 YouTube는 블로그를 통해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내 저작권 침해 신고 및 확인 방식을 개편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함.
  - 음반회사(record label)나 영화 스튜디오(record label) 등 저작권을 주장하는 권리자는 앞으로 수동으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신고 시에 문제 된 크리에이터의 해당 콘텐츠에서 저작권 침해 요소가 정확히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를 컴퓨터에 기록된 시간을 의미하는 타임 스탬프(time stamps)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 이처럼 정확하게 저작권 침해 부분을 지목하지 않으면 저작권자는 앞으

로 YouTube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가 없게 되었음.

- 이를 통해 YouTube는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침해 신고의 정당성 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검색 및 확인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음.
- 크리에이터들도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영상이 삭제 조치되는 일을 겪고 싶지 않은 크리에이터들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을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인한 YouTube의 제재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음.
  - 크리에이터들은 이제부터 저작권자가 주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i)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는 음악이나 소리를 음소거 하거나 ii) YouTube library의 무료 음악이나 소리로 대체하거나 iii) 문제 된 영상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음.
  - 크리에이터는 위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부터 자동적으로 해제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옵션들은 이전에도 사용될 수는 있었으나 크리에이터들이 저작권 침해 부분을 직접 자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었음.

### 기존 YouTube의 저작권 침해 신고 방식 및 문제점

- 기존 YouTube의 저작권 침해 신고 방식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는 영상에 대해 YouTube에 신고하면 YouTube가 크리에이터를 통제 및 제재하는 방식이었음.
- 이전부터 현재까지는 저작권자들이 YouTube에 수동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 (manually reporting infringement)를 할 때 해당 콘텐츠의 정확한 저작권 침해 부분이나 위치를 지목할 필요가 없었음.

- 때로는 저작권자들이 이러한 YouTube의 수동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악용하여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기함으로써 무고한 크리에이터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음.
  - 원저작자가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는 콘텐츠를 YouTube에 신고하게 되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계정을 가진 크리에이터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해당 콘텐츠에 대한 수익 창출은 물론이고 YouTube의 많은 기능을 이용할 수 없게 됨.
  - 특히 해당 콘텐츠가 YouTube의 가이드 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콘텐츠에는 노란색 표시가 붙게 되는데 이러한 노란색 표시가 붙게 되면 해당 콘텐츠로 인해 더 이상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됨.
  - 문제 된 계정의 정상화에는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지속적인 YouTube의 모니터링을 받게 되는 페널티를 받게 됨.
  - 총 3번의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게 되면 해당 크리에이터의 계정은 7일 뒤 삭제됨.
- 많은 크리에이터들은 저작권자들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신고에 불만을 토로해 왔음. 특히 몇 초에 불과한 음악이나 콘텐츠의 일부분이 자신의 콘텐츠에 삽입이 되어도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해당 콘텐츠가 삭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음.
- 특히 YouTube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수익 창출 중단 조치 외에도 사전 통보 없이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 온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크리에이터의 계정을 해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음.
- 기존의 신고 방식은 크리에이터들로 하여금 YouTube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기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자신들이 침해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콘텐츠 내지 영상 전체에서 도대체 어느 부분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를 찾아내도록 의무를 부담지게 함으로써 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고 평가되어 왔음.



- 특히 저작권 지식이 부족한 크리에이터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만약 크리에이터들이 미리 저작권 침해 여부가 잠재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스스로 편집하려고 해도 과연 저작권자가 YouTube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기 전에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용 동의를 해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언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할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었음.

## 평가 및 전망

- YouTube의 저작권 침해 신고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 YouTube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시스템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저작권자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 신고 청구의 정당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높이 평가되고 있음.
- 이러한 YouTube의 수동 저작권 침해 신고 방식의 변화를 시작으로 YouTube 전체 시스템이 보다 명확해지고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특히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부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음.
- 이번 YouTube의 저작권 침해 신고 방식에 대한 계획 발표는 얼마 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YouTube에 대한 약관 시정권고안을 YouTube가 수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시정권고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 참고자료

<https://www.theverge.com/2019/7/9/20687985/youtube-manual-copyright-claim-updates-timestamps-automatic-release>

<https://www.theverge.com/2019/7/12/20690311/youtube-monetization-merch-stickers-superchat-record-labels-networks-umg>

<https://youtube-creators.googleblog.com/2019/04/addressing-creator-feedback-and-update.html>

**미국**

## 법원, 공정이용에 있어서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함

김지영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법원은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네 가지 요소 중 네 번째 요소인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법원은 원고가 단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시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의 저작물 시장에 영향이 생겼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배경**

- 원고 Red Label Music Publishing은 Super Bowl Shuffle(이하 '이 사건 저작물')의 음악, 가사, 음반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 Renaissance Marketing Corporation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위 권리들의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관리함.
- 원고와 그의 대리인은 Chila Production, Richard Lenkov 그리고 Scott Prestin이 제작하여 2016년 개봉한 '85: The Greatest Team in Football History'에 이 사건 저작물 부분이 원고와 그의 대리인의 허락 없이 복제되어 사용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였음.
- 이 사건 저작물은 피고의 작품에 악곡 부분이 8초 정도 사용되었고, 그 중 4초 정도만 가사도 포함되었음. 또한 피고의 작품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뮤직비디오도 59초 정도 포함되었는데, 피고들은 이를 16개의 클립으로 분할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클립은 1초에서 8초 정도이며, 그 중 오디오와 비디오가

함께 등장한 것은 8초임. 이와 더불어 클립들은 음소거 되어 재생되는 와중에 해설자의 목소리가 함께 재생되었음.

- 원고와 피고들은 약식판결을 요청하였기에 법원은 피고의 공정이용 항변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한 공정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률상의 방어 방법으로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4가지 요소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배타적이지 않은 요소로 법원은 반드시 모든 요소를 판단해야 함. 요소들은 (1)피고 저작물의 목적과 특성, (2)원고 저작물의 성격, (3)원고 저작물이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4)원고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에 대한 영향력임
- 피고 저작물의 목적과 특성
  - 피고 작품은 전기(biographical) 다큐멘터리로 내셔널 풋볼 리그(NFL)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성공적인 팀 중 하나인 1985 Chicago Bears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약 100분 동안 피고 작품은 예전 선수, 코치 그리고 팬들의 입장에서 전체 시즌을 리뷰하고 있음. 그 중 5분 동안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하여 언급함.
  -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이 피고 작품에서 원래의 오락 기능이 아닌 역사를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묘사적이며 단지 Chicago Bears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그렇기에 법원은 피고 작품의 목적과 특성은 1985 Chicago Bears의 스포츠-사회 현상에 대하여 언급하기 위함이고, 여기에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한 것은 그 저작물의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법원은 첫 번째 요소에 대하여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판단하였음.

○ 원고 저작물의 성격

- 먼저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은 독창적이며 창작적이기에 저작물 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음. 하지만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 사용이 역사적 사실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중요도가 낮게 판단된다고 하였음.
- 또한 피고 작품은 이 사건 저작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기에 두 번째 요소는 중립적이라고 판단하였음.

○ 원고 저작물이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 세 번째 요소는 피고가 원고 저작물과 관련해서 사용한 양에 대한 부분으로, 법원은 때때로 피고가 원고 저작물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물어왔음.
- 이 사건 법원은 피고 다큐멘터리에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 사용된 양과는 상관없이 이 사건 저작물의 실질적인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체 6분에 해당하는 원고 저작물 중 노래의 경우는 2%, 뮤직비디오의 경우는 17%를 사용한 것은 다큐멘터리에서 역사적 참고자료 역할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그렇기에 이 사건 법원은 세 번째 요소에 대하여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판단하였음.

○ 원고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에 대한 영향

- 이 사건 법원은 네 번째 요소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는 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음.
- 이 사건 법원은 피고 작품을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 대신 구입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작품이 이 사건 저작물의 청각 또는 시청각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복제권 등에 대한 라이선스 시장이 있음을 증명

하였지만 이 사건 법원은 원고가 이것만을 증명한다고 해서 피고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음. 또한 원고는 피고의 다큐멘터리로 인하여 이 사건 저작물의 라이선스 시장이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음.

- 더불어 다큐멘터리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미미한 부분을 복제하여 사용한 것은 노래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시장이며, 이 사건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 클립을 구매하려고 하는 구매자는 피고 다큐멘터리에 사용된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 클립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기에, 피고의 사용이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 시장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음.
- 그렇기에 이 사건 법원은 네 번째 요소에 대하여 중립적이라고 판단하였음.

## 결론 및 평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원은 공정이용 네 가지 요소 중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공정이용에 유리하고,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중립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고 다큐멘터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이 사건 법원은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네 가지 요소 중 네 번째 요소인 잠재적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들은 라이선스 시장을 운영하는 것의 증명뿐만 아니라 피고로 인하여 실제 라이선스 시장에 악영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이 주목할 만함.

## ※ 참고 자료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illinois/ilndce/1:2018-cv-07252/358037/119/>

**미국**

## 법원, SNS에 제3자가 게시한 사진을 무단으로 다시 게시한 것도 원저작자 저작권에 대한 침해다

**김혜성**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대학생이 하와이 풍경 전문 사진작가의 사진을 이용해 과제로 만든 가상의 생수 광고가 게시된 Pinterest 게시물을 생수 회사가 사진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사의 상업적인 Pinterest 페이지로 퍼가 다시 게시(re-pinned)한 것이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이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생수 회사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 Vincent Khoury Tylor(이하 ‘Tylor’)는 하와이 풍경 전문 사진작가임.
  - Tylor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라이선싱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진을 판매 또는 이용허락 해 주는 사업을 함.
- 이 사건은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Tylor가 찍은 세 장의 사진(‘7개 폭포’ 사진, ‘아카카 폭포’ 사진, ‘와이메아 캐니언’ 사진)과 관련된 것임.
- Hawaiian Springs, LLC(이하 ‘Hawaiian Springs’)는 3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상업적인 페이스북 페이지와 상당히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상업적인 Pinterest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 아카카 폭포 사진
  - 2017년 8월 18일 Tylor는 Hawaiian Springs가 아카카 폭포 사진을 복

제해서 상업적인 Pinterest 페이지에 이용하고 있음을 알게 됨.

- Tylor는 Hawaiian Springs가 자신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사진을 상업적인 Pinterest 웹 페이지에 무단 이용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Hawaiian Springs가 제출한 Brea Aamoath(이하 ‘Aamoath’)의 진술서에 따르면, Aamoath는 Tylor의 아카카 폭포 사진을 이용해서 대학교 과제로 가상의 Hawaiian Springs의 생수 광고를 만들어 자신의 개인 Pinterest 페이지에 게시함.
- Aamoath는 Hawaiian Springs의 직원이 아님.
- Hawaiian Springs의 전임 마케팅 담당자는 자신이 Pinterest에서 Aamoath의 가상 광고를 보고 이를 Hawaiian Springs의 Pinterest 페이지로 퍼가 다시 게시했다(re-pinned)고 진술함.

○ 와이메아 캐니언 사진

- Tylor는 Hawaiian Springs가 2010년 10월 22일부터 와이메아 캐니언 사진을 복제해 상업적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용하고 있음을 알게 됨.
- 이 와이메아 캐니언 사진 복제본의 오른쪽 하단에는 Tylor의 저작권 관리 정보가 표기되어 있었음.

 **사건의 전개 및 당사자들의 주장**

- 2016년 8월 8일 Tylor는 Hawaiian Springs에 자신의 사진을 이용한 Pinterest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를 받은 이후 Hawaiian Springs는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함.
- Tylor는 세 장의 사진을 무단 이용한 것에 대하여 Hawaiian Springs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해 달라며 부분 약식명령(Motion for Partial Summary Judgment)을 청구함.



- 이에 대하여 Hawaiian Springs는 아카카 폭포 사진이 포함된 Pinterest 게시물을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함.

## 법원의 판단

- Tylor가 문제의 세 장의 사진에 대하여 유효하게 저작권 등록을 한 저작권자 임에는 다툼이 없음.
  - Hawaiian Springs가 세 장의 사진을 복제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 (direct evidence of copying)가 있음.
- Hawaiian Springs는 원고의 사진들을 자신의 상업적인 페이스북 및 Pinterest 페이지에 게시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Tylor는 이러한 사진의 이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음.
  - 다만 Hawaiian Springs는 상업적인 페이스북 및 Pinterest 페이지의 관리는 외부 업체가 담당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그 사진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함.
  - 그러나 Hawaiian Springs가 허락 없는 이용임을 알았는지 또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책임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님.
- Hawaiian Springs의 아카카 폭포 사진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음.
  - Hawaiian Springs가 Aamoth가 학교 과제로 만든 가상의 광고를 다시 pin함으로써 Tylor의 사진을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amoth가 Tylor의 아카카 폭포 사진을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고려할 점이 아님.
  - Hawaiian Springs는 Tylor의 사진을 연구, 비판, 과학 또는 예술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오직 상업적인 목적에서 이용하였음.

- Hawaiian Springs는 그 이용이 Tylor의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공정이용 항변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음.
- Hawaiian Springs의 마케팅 담당자는 해당 사진을 광고로서 Hawaiian Springs의 Pinterest 페이지에 게시하였음이 인정됨.

## 평가

- 이는 SNS의 원게시물이 사진을 공정이용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게시물에 이용된 사진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상업적 페이지로 다시 가져가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임.

## ※ 참고 자료

<https://www.photoattorney.com/wp-content/uploads/2019/07/Tylor-v-Hawaiian-Springs-LLC.pdf>

<https://www.mediapost.com/publications/article/337851/repinning-a-photo-infringes-copyright-judge-rules.html>

<https://www.photoattorney.com/court-gives-support-to-photographers-infringement-claims/>

**일본**

**법원, 기사에 비평 목적으로 특정 사진을 사용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정당한 인용이라 할 수 없다.**

**권용수**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도쿄지방법원은 성명불상자가 기사 작성에 원고의 사진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것과 관련해 저작권법상 인용의 적용 여부에 대한 사건에서, 사진 저작물의 이용 목적이 비평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① 이 사건 기사의 사진 크기가 독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크기라는 것, ② 그 목적이 비평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을 인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출처도 표시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그 인용 방법 및 형태가 인용 목적과의 관계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종교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종교법인이며, 피고는 전기통신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임.
- 성명불상자 A와 B는 피고가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용해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를 작성·업로드 하였는데, 해당 기사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사진 저작물(이하 ‘이 사건 사진 저작물’)을 사용함.

-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성명불상자 A와 B가 자신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sup><1></sup>에 의거해 성명불상자의 정보 제공을 요구함.

##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 원고가 이 사건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자인지
  -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이 자신의 성교신문사 보도국에 고용된 직원 X가 2018년 8월 6일 근무시간 중에 그 업무로서 촬영한 사진 즉, 원고의 기획에 따라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임을 지적하며 자신이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진다고 설명함.
  - 또한 원고는 자신의 취업규칙에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자신이 저작권자가 된다고 주장함.
- 의거성의 유무
  - 피고는 이 사건 기사 업로드 전에 이 사건 사진과 피사체나 구도가 비슷한 사진을 게재한 기사가 업로드 된 것을 지적하고,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사진이 아닌 해당 기사의 사진을 이용할 의사로 이 사건 기사를 업로드 한 것이라고 설명함.
  -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사진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인용의 적용 여부
  - 원고는 ① 이 사건 기사에 작성자의 실명과 이 사건 사진의 출처를 표시

---

<1>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특정 전기통신에 의한 정보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해당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권리 침해에 관계된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 않은 채 다른 기사에 게재된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하였다는 것, ② 이 사건 기사에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할 필요성이 없고, 기사 내용이 저작자인 원고의 제작 의도에도 크게 반하는 만큼 자신이 정당한 인용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 ③ 이 사건 사진이 타인의 저작물인 것이 명료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함.

- 따라서 이 사건 기사에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한 것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보도, 비평, 연구 그 밖의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일본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반면 피고는 ① 이 사건 사진을 복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진이 이미 공표된 것이라는 점, ②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비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 ③ 이 사건 기사에서 성명불상자의 의견 또는 비평을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진과의 주종관계도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당한 인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함.

## 인용에 의한 저작물 사용

- 일본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공정한 관행에 합치할 것, 보도, 비평, 연구 그 밖의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일본 문화청은 일본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의 인용과 관련해 다음의 사항에 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sup><2></sup>

<2> 最判昭和55年3月28日「パロディー事件」참고.

-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필연성이 있을 것
- 대괄호를 사용하는 등 자신의 저작물과 인용 부분을 구분할 것
- 자신의 저작물과 인용하는 저작물의 주종관계가 명확하며, 자신의 저작물이 주체일 것
- 출처를 표시할 것<sup><3></sup>

## 법원의 판단

- 도쿄지방법원은 우선 원고의 취업규칙과 일본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sup><4></sup>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저작자로서 그 저작권을 가진다고 인정함.
- 의거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기사에 게재된 사진과 이 사건 사진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지적하고, 그렇다면 성명불상자가 다른 기사의 사진에 의거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다른 기사를 통해 이 사건 사진에 의거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 한편 도쿄지방법원은 익명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사진의 부자연스러움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그 아래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그 목적이 비평에 있다고 인정함.
- 그러나 ① 이 사건 기사의 사진 크기가 독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크기라는 것, ② 그 목적이 비평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을 인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출처도 표시하지 않은

<3> 일본 저작권법 제48조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그 복제 또는 이용 형태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방법 및 정도에 따라 그 출처를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4> 일본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인 등의 기획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프로그램 저작물은 제외)을 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하는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저작자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것을 지적하며, 그 인용 방법 및 형태가 인용 목적과의 관계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도쿄지방법원은 인용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다른 권리제한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송신가능화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성명불상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함.

## ※ 참고 자료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584>

[http://www.bunka.go.jp/seisaku/chosakuken/seidokaisetsu/gaiyo/chosakubutsu\\_jiyu.html](http://www.bunka.go.jp/seisaku/chosakuken/seidokaisetsu/gaiyo/chosakubutsu_jiyu.html)

**중국**

**선전중원법원, 대학입학시험 수학문제해설은 수학과목의 특성 상 필수불가결한 표현이 많으므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음**

**박다현**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대학입학시험 수학문제해설의 저작물성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선전중원법원은 수학문제해설은 제한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독창성이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및 사건 경과**

- 원고는 선전시청모지혜교육주식유한공사로 2009년부터 청모왕(菁某网)이라는 학습사이트를 운영함. 원고는 2017년 수능수학 시험지에 대한 문제풀이를 17년 6월 9일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고, 같은 해 9월 6일 문제해설을 게시하고, ‘2017학년도 수능문제해석1 : 전국책I, II, III 문과수학’을 광동성판권국에 저작권등록을 함.
- 피고는 두정세계인터넷기술유한공사로 피고사이트 이용자ID ‘一品江山’은 원고 해설집의 1~29페이지 분량을 피고의 사이트에 2017년 6월 12일 업로드 하고 같은 해 10월 23일 무렵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함.
- 원고는 피고의 사이트에서 원고의 저작물이 침해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이는 원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즉시 침해를 중지하고 사과와 함께 경제적 손실 1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주장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해설집은 작성자의 수능문제지 이해력과 편집방법 등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허가 없이 사이트에 원고의 해설집을 다운로드 서비스로 제공한 행위는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경제적 손실 2천위안과 합리적 비용 1천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피고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의 사이트는 단순히 파일 공유 플랫폼일 뿐이며, 사이트 이용자가 올린 파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편집하지는 않지만 해적판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올릴 수 없다고 이용자에게 공지해 왔다고 주장함.
-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문제해설은 수학기호, 알파벳, 숫자, 짧은 문자(수학분야 고유명사)로 이뤄졌으며, 형식이 짧고 문제해결 방법도 일반적인 문제해결 방식일 뿐 독창성이 없어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판결

- 선전중원(深圳中院)법원은 아이디어가 하나 또는 매우 제한적인 몇 가지의 표현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러한 표현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수학이라는 학문적 특성상 수학문제는 일반적인 규칙들을 따라야 하므로 표현상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많아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 법원은 기본적으로 수학의 공식, 계산과정, 시험 장소에 대한 설명 등은 간단하며 누구라도 동일한 연산을 하고 동일한 형식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판단함.
  - 이 부분까지 보호하면 수능시험의 문제풀이에 대한 독점이 초래되어 수업연구를 방해할 수 있고, 아이디어, 공식, 기본개념 등을 보호하지 않는 저작권법의 해석과도 저촉됨

## 평가 및 전망

- 해설집 자체의 전체적인 창작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며 이용된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고, 수능문제의 수업연구를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 참고 자료

<https://finance.sina.com.cn/roll/2019-06-18/doc-ihxvchpr4266474.shtml>

[http://news.ycwb.com/2019-06/17/content\\_30280636.htm](http://news.ycwb.com/2019-06/17/content_30280636.htm)

**일본**

## 중국 법원, 클라우드 서버 제공자는 서버 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백지연**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제3자가 피고인 알리클라우드의 서버를 임대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온라인 게임을 제공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중국 지식재산법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한 알리 클라우드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자사가 독점권을 가진 ‘마스터탱커(我叫MT) 온라인 애니메이션’을 토대로 ‘모바일 게임 마스터탱커(我叫MT)’, ‘마스터탱커2(我叫MT2)’를 개발함. 지난 2015년 8월, 원고는 게임유저로부터 “callmt.com” 사이트에서 “마스터탱커 상쾌판(我叫MT畅爽版)”의 IOS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게임 캐시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신고를 받았고, 확인 결과 해당 게임이 “마스터탱커(我叫MT)”를 불법복제 한 것과 피고인 알리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함. 원고는 피고인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알리클라우드유한공사(阿里云计算有限公司)에 두 차례 침해내용을 삭제하고 운영자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보냈으나, 알리클라우드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여 북경시 석경산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인 알리클라우드는 게임을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며, 서버 제공은 <네트워크 전송권 보호조례>에서 규정한 '정보저장 서비스'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

음을 주장하였음.

- 본안에 대해 일심 법원은 알리클라우드가 서버 제공 업체로 침해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의무는 없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지한 후(원고의 침해행위 중단에 대한 통지서를 받은 시점)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미루어,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25만 위안(한화 약 428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이에 대해 피고인 알리클라우드는 북경시 지식재산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에 항소하였음. 피고는 자신들은 단순히 클라우드 서버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침권책임법><sup><1></sup> 제36조<2><sup><2></sup>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통지-삭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3>

- 북경시 지식재산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의 클라우드 서버 임대행위는 <네트워크 전송권 보호조례>에 규정된 4가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함.
  - <네트워크 전송권 보호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침권책임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함. <침권책임법> 제36조에 의하면, “통지 및 필

<1> 한국의 “불법행위법”에 해당.

<2> <침권책임법>제36조: “인터넷사용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통지를 받고서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의 확대 부분에 대하여 그 인터넷이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사용자가 그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터넷사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3> 북경지식재산법원 (2017) 경 73 민중 1194호 판결

요 조치”에 대한 규정은 모든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는 규정이므로 본안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또한 <침권책임법> 제36조의 온라인서비스제공에 포함됨.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통지의 경우 침해 저작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 역시 불분명하였으므로 법률에서 규정한 적법한 통지라 볼 수 없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피고가 법률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 법원은 원고의 통지가 적법한 통지라 하더라도 피고는 “삭제, 차단 혹은 연결 중단”과 같은 서버의 “폐쇄”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함. 이는 클라우드 서버 제공자가 클라우드 서버 내의 구체적인 정보를 통제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제한과 이용자의 데이터 보호라는 상업 윤리를 고려하여 클라우드 서버는 “통지 공유”를 필요한 조치로 행할 수 있음.

## 평가 및 향후 전망

- 1심 법원의 판결은 중국이 처음으로 클라우드 서버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으로 서버 제공자도 지재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자신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침해물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로 서버 제공자의 관리 역할 강화 및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권리보호를 가능하게 해 주목을 받았음. 그러나 이번 항소심 법원이 일심 법원의 판결을 번복함에 따라 향후 중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저작권 문제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 참고 자료

[http://www.sohu.com/a/322370497\\_487482](http://www.sohu.com/a/322370497_487482)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401304.html>